

## KRESG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	비고
<b>총칙</b>	<b>총칙</b>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 6조 (용어의 정의) ① ~ ③ (생략) ④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상법」 상 집행임원을 말한다. ⑤ (생략)	제 6조 (용어의 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상법」 상 집행임원을 말한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는 이와 등등한 직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정합성 합치를 위한 문구 추가
<b>I. 주주총회 일반</b>	<b>I. 주주총회 일반</b>	
<b>1. 의결권 일반</b> 1.1. ~1.5. (생략)	<b>1. 의결권 일반</b> 1.1. ~ 1.5. (현행과 같음)	
<b>II.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b>	<b>II.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b>	
<b>1. 재무제표 승인</b> 1.1. (생략)	<b>1. 재무제표 승인</b> 1.1. (현행과 같음)	
<b>2. 배당 승인</b> 2.1. (배당정책) 회사가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개하고, 이러한 배당 정책에 의해 배당을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	<b>2. 배당 승인</b> 2.1. (배당정책) 회사가 <u>기업가치</u> 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개하고, 이러한 배당 정책에 의해 배당을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	자구 수정
2.2. (배당금 지급 수준) 회사의 이익규모, 현금흐름, 투자기회, 부채비율, 배당 가능이익 등 재무상황, 동종업계 배당수준, 배당지급 이력,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규모, 총주주환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금 지급 수준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 또는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2.2. (배당금 지급 수준) 회사의 이익규모, 현금흐름, 투자기회, 부채비율, 배당 가능이익 등 재무상황, 동종업계 배당수준, 배당지급 이력,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규모, 총주주환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금 지급 수준이 <u>기업가치</u> 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 또는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자구 수정
2.3. (현물배당) 금전 외의 재산으로 현물배당하는 경우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	2.3. (현물배당) 금전 외의 재산으로 현물배당하는 경우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u>기업가치</u> 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	자구 수정
<b>III. 정관 변경</b>	<b>III. 정관 변경</b>	
<b>1. 총칙</b> 1.1. (생략)	<b>1. 총칙</b> 1.1. (현행과 같음)	
<b>2. 주식</b> 2.1. ~ 2.5. (생략)	<b>2. 주식</b> 2.1. ~ 2.5. (현행과 같음)	
<b>3. 사채</b> 3.1. ~ 3.3. (생략)	<b>3. 사채</b> 3.1. ~ 3.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비고
<b>4. 주주총회</b> 4.1. ~ 4.3. (생략)	<b>4. 주주총회</b> 4.1. ~ 4.3. (현행과 같음)	
4.4. (신설)	<b>4.4. (전자주주총회)</b>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배제하거나 주주의 전자적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주주총회 현장개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한다.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신설
<b>5. 이사 및 이사회</b> 5.1. (집중투표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반대한다.	<b>5. 이사 및 이사회</b> 5.1. (집중투표제) ①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안건을 분리하여 상정하는 경우 반대한다.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및 반대 사유 명확화
5.2.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안에 반대한다.	5.2. (독립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독립이사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안에 반대한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5.3. ~ 5.4. (생략)	5.3. ~ 5.4. (현행과 같음)	
5.5. (이사회 규모 및 구성변경) ①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안에 반대한다. ②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 반대한다. ③ (생략)	5.5. (이사회 규모 및 구성변경) 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기능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사회 규모의 과도한 축소 또는 확대 안에 반대한다. ②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독립이사의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 반대한다. ③ (현행과 같음)	규정 정비 상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5.7. (이사회 의장) ① 고위경영자(CEO 등)와 이사회 의장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②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5.7. (이사회 의장) ① 고위경영자(CEO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와 이사회 의장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에 찬성한다.	규정 정비 상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5.8. (생략)	5.8. (현행과 같음)	
5.9.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상법」상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가 해당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찬성한다. ③ (생략)	5.9.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 독립이사(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법령상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가 해당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규정 정비

현행	개정	비고
<b>6. 감사 및 감사위원회</b> 6.1. (생략)	<b>6. 감사 및 감사위원회</b> 6.1. (현행과 같음)	
<b>7. 계산</b> 7.1. ~ 7.2. (생략)	<b>7. 계산</b> 7.1. ~ 7.2. (현행과 같음)	
<b>IV. 임원 선임</b>	<b>IV. 임원 선임</b>	
<b>1. 이사</b> 1.1. (생략)	<b>1. 이사</b> 1.1. (현행과 같음)	
1.2. (성별 구성에 관한 법령 위반) 성별 구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20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의장 또는 사외이사(또는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장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	1.2. (성별 구성에 관한 법령 위반) 성별 구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20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의장 또는 <u>독립이사</u> (또는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장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1.3. ~ 1.4. (생략)	1.3. ~ 1.4. (현행과 같음)	
<b>2. 사외이사</b> 2.1. (사외이사 후보 요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IV.1.1. (이사 후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li><li>· 'IV.2.2.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li><li>· 기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ul>	<b>2. 독립이사</b> 2.1. ( <u>독립이사</u> 후보 요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독립이사</u>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IV.1.1. (이사 후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li><li>· 'IV.2.2. (<u>독립이사</u>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li><li>· 기타 <u>독립이사</u>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ul>	상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2.2.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생략)	2.2. ( <u>독립이사</u> 독립성 기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u>독립이사</u>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현행과 같음)	상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2.3. (사외이사 전문성 기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다음 사유(예시)와 같이 경제·경영·법률·회계 관련 산업 등 회사 경영 및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생략)	2.3. ( <u>독립이사</u> 전문성 기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u>독립이사</u>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다음 사유(예시)와 같이 경제·경영·법률·회계 관련 산업 등 회사 경영 및 <u>독립이사</u> 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u>독립이사</u>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생략)	상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b>3.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b> 3.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요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독립성 또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임에 반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외이사의 선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li></ul>	<b>3.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b> 3.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요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독립성 또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임에 반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사 및 <u>독립이사</u>의 선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li></ul>	규정 정비
3.2. (생략)	3.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비고
<b>4. 이사 및 감사의 해임</b> 4.1. (생략)	<b>4. 이사 및 감사의 해임</b> 4.1. (현행과 같음)	
<b>V. 임원 보수</b>	<b>V. 임원 보수</b>	
<b>1. 이사 보수</b> 1.1. (이사의 보수한도)  이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찬성한다. 다만,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 이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금액 수준이 경영 성과 및 기업규모 대비 과다한 경우 · 업종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당기 보수 실지급액이 차기 보수한도에 크게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차기 보수한도를 인상하는 경우 · 총주주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한도를 인상하는 경우 · 이사회 내 이사 인원수의 변동에 따른 보수한도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b>1. 이사 보수</b> 1.1. (이사의 보수한도)  <u>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u> 다만,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 이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금액 수준이 경영 성과 및 기업규모 대비 과다한 경우 · <u>당기 경영 성과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기 보수한도를 인상하는 경우</u> · <u>당기 보수 실지급액이 차기 보수한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u> · 총주주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한도를 인상하는 경우 · 이사회 내 이사 인원수의 변동에 따른 보수한도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가독성 강화 및 평가체계의 정교화 등 규정 정비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 (성과보수의 지급 기준)  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 안에 대해서는 동종 업계,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3. (성과보수의 지급 수준)  <u>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u> 단, 성과 연동형 보수의 규모가 동종 업계 및 시장 상황, 재무 상태 등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반대사유 구체화 등 규정 정비
1.4. (신설)	<u>1.4. (성과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시)</u>  ① 회사가 이사의 보수 산정 기준, 지급 근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연동형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성과 연동형 보수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성과 측정의 지표(KPI) 및 그 설정 근거 · 단기 및 장기 성과 보수의 배분 비율과 지급 시기 · 현금 및 주식 보상의 배분 기준	보수 공시 강화에 따른 규정 신설 및 보수정책 규정과의 통합
1.4.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	1.5.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	번호 수정
1.5. (성과보수의 환수)  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가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찬성한다.	1.6. (성과보수의 환수)  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가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찬성한다.	번호 수정
1.6. (성과보수와 보수 정책)  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 안에 대해서는 동종 업계,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4 조문과 통합)	삭제

현행	개정	비고
1.7. (신설)	<p><u>1.7. (임원 보수 공시 확대)</u></p> <p>① <u>개별임원의 보수 공시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u></p> <p>② <u>개별임원 보수 공시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안에 찬성한다.</u></p>	보수 공시 강화에 따른 공시범위 및 대상 확대 등 규정 신설
<b>2. 감사 보수</b> 2.1. (생략)	<b>2. 감사 보수</b> 2.1. (현행과 같음)	
<b>VI. 임원 보수</b>	<b>VI. 임원 보수</b>	
<b>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b> 1.1. (생략)	<b>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b> 1.1. (현행과 같음)	
1.2.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보수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1.2. (독립이사 및 감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독립이사 및 감사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단,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찬성한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원칙 반대, 예외 찬성을 구체화하는 규정 정비
<b>VII. 임원 퇴직보상금</b> 1.1. (퇴직보상금) ① 임원에게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직 중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②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반대한다.	1.1. (퇴직보상금) ① 임원에게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직 중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②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u>안에</u> 반대한다. 단, 이사회로 결정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확한 지급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 찬성한다.	원칙 반대, 예외 찬성을 구체화하는 규정 정비
<b>VIII. 기업구조 개편</b>	<b>VIII. 기업구조 개편</b>	
<b>1. 기업구조 개편</b> 1.1. ~ 1.5. (생략)	<b>1. 기업구조 개편</b> 1.1. ~ 1.5. (현행과 같음)	
<b>IX. 기타</b>	<b>IX. 기타</b>	
<b>1. 자본금 감소</b> 1.1. (생략)	<b>1. 자본금 감소</b> 1.1. (현행과 같음)	
<b>2. 상장폐지</b> 2.1. ~ 2.2. (생략)	<b>2. 상장폐지</b> 2.1. ~ 2.2. (현행과 같음)	